

2011. 1. 27. (목) 10:00

제1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제2차 본회의

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보고서

총무위원회

【 목 차 】

1.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
조례안 ----- 1
2.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----- 4
3.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 8
4.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계획변경
동의안 ----- 10
5.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----- 13

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

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1. 12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. 1. 12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1. 21.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3호

2 개정이유

- 거창군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하고 있는 “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”의 명칭과 목적, 기능 등을 그 통합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,
- 통합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, 회의 등 세부 운영에 관한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일반적인 위원회의 규정 순서 및 체계에 맞게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”와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“지방

재정공시심위위원회”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행 “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회”의 명칭을 “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회”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의 설치 목적, 기능 등을 통합 취지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비함(제명, 안 제1조 및 제2조).

○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.

- 「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회 운영조례」

⇒ 「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회 운영조례」

○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에 자문기능과 심의기능을 명확히 구분 하여 규정함.

-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
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7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

나.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의 사전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하는 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(안 제6조제3항).

○ 3주일 전까지 ⇒ 7일 전까지

다. 그 밖에 통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인 위원회의 규정 순서 및 체계에 맞게 개선·보완함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재정계획 수립 자문과 재정운용상황 공시 심의를 위하여 통합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나 미비점이 많아 일반적인 위원회의 규정 순서 및 체계에 맞게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- 이 조례는 총 1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, 목적, 기능, 구성, 위원의 임기, 위원장의 직무, 회의, 의견청취,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
- 현행 조례 제명인 「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」를 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공시위원회를 통합한 「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」로 조례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음.
- 안 제2조(기능)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심의와 자문기능을 심의기능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자문기능과 심의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
-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의 사전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하는 시기를 현행 3주일 전까지를 7일 전까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음.
- 상기와 같이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1. 12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. 1. 12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1. 21.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4호

2. 개정이유

-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('09.12.17)의 후속조치로써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기회를 부여하고,
-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과 임용절차 중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, 시간제근무의 도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공무원법」의 위임근거 및 조례의 내용과 일치 하도록 제명을 변경함.

- 「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」
⇒ 「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」

나. 현행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 자격기준을 별표로 명시함(안 제4조제3항, 별표 신설).

다.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(안 제5조제2항 신설).

-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하되,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거나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

라.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기회를 부여함(안 제8조의 2 신설).

- 군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으며,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

마.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임의 규정을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관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변경함 (안 제12조의2).

바.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단축하여 근무 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의 지정과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채용 근거를 마련함(안 제12조의3 신설).

-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(주 40시간)보다 짧게 근무 (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)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,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음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[표준안] 개정 [안] 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(2010. 7.)됨에 따라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써
- 지방공무원법의 위임근거 및 조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
-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별표에 명시하였으며
-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공고 생략의 근거인 단서 조항도 마련하였음.

- 또한, 안 제8조의2항을 신설하여 교육훈련 이수기회를 부여하여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- 안 제12조의2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, 보수,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였고
- 안 제12조의3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 하였음.
- 상기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1. 12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. 1. 12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1. 21.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5호

2. 개정이유

수해복구 공사로 인한 행정구역 경계에 접한 토지 등에 대하여 관할 구역을 확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조문 변경 및 용어를 순화함(안 제조).
 -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
⇒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
 -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⇒ 제81조에 따른
- 나.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관할구역 정비(71필지 64,098㎡)(안 별표 1).

- 거창읍 서변리 1147-55번지의 60필지 50,357m²를 거창읍 학리로
경계 조정
- 거창읍 서변리 1147-79번지의 6필지 5,327m²를 거창읍 양평리
로 경계 조정
- 거창읍 학리 1047-4번지의 1필지 7,879m²를 거창읍 서변리로 경계 조정
- 거창읍 양평리 1239-69번지 535m²를 거창읍 서변리로 경계 조정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황강천 수해복구공사로 인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으로
2개의 법정리 번지로 나누어져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주민
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하는 것으로써
-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관할구역을
정비하고,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의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
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
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승강기산업벨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
계획변경 동의안
[심 사 보 고 서]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1. 14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. 1. 14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1. 21.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6호

2. 제안이유

-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20개이상 유치시 8만평 이상 공장용지가 소요되므로 20개이상 유치를 위해서 지원기준 완화가 필요
- 투자유치 계획서 제출업체가 요구하는 공장용지 제공시 군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해 업체가 요구하는 면적을 5만여평으로 조정 불가피
- 일반산업단지 분양공고 지연으로 2010년 12월까지 투자(분양)계약 체결 애로
- 기업체 특성상 20여개 이상 업체와 일시에 동시 계약 체결 애로
- 군 재정상 「시설·설비자금 융자」 이자지원 기간 조정

3. 주요내용

구 분	당 초	조 정·변 경	비고
특별지원 대상 선정기준	국가 재정자금 지원 기준인 ◦ 창업·신설·증설의 경우 이전 전·후 30인 이상 또는 ◦ 전부 이전의 경우 이전 전·후 10인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20개 이상 유치시	◦ 입주후 상시고용 10인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20개이상 유치 시	
업체수 및 공장 용지	◦ 20개 업체 이상 ◦ 5만여평	◦ 20개 업체 이상 ◦ 168,595m ² (5만1천여평)	
시설·설비 자금 융자 이자 지원	◦ 3년거치 5년 균분상환	◦ 2년거치 3년 균분상환	
특별지원 소요예산	①재원별 : 총257.53억원 ◦ 국비10.34억 ◦ 도비26.63억 ◦ 군비188.94억 ◦ 민자31.62억 ②연도별 군비 소요액 ◦ '11(65.95억) ◦ '12(51.78억) ◦ '13이후(71.21억)	①재원별 : 총220.34억원 ◦ 국비8.65억 ◦ 도비19.36억 ◦ 군비160.71억 ◦ 민자31.62억 ②연도별 군비 소요액 ◦ '11(41억) ◦ '12(44.26억) ◦ '13이후(75.45억) ※산출내역 : 불임2참조	
계약체결 기간조정	◦ 2010년 12월까지 계약체결	◦ 2010. 12. 29 ~ 2011. 2월까지	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승강기 R&D는 기업에 대한 지원시설이므로 R&D 관할청인 지식경제부와 경상남도에서 20개이상 업체 유치시 R&D를 건립할 수 있다는 요청이 있으므로 당초 계획안과 같이 추진할 경우 10만평의 부지가 필요하고, 거창군 지원금이 너무

많이 소요되므로 수용이 불가하기에 지원 대상기준을 완화하여야만 5만평부지에 20개이상 업체를 유치할 수 있으며

- 또한 이차지원기간을 3년거치 5년을 2년거치 3년으로 조정하고, 계약체결기간은 산업단지 분양공고가 지연되었기에 조정이 불가피함.
- 우리군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할 때 계획 변경 안을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1. 14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. 1. 14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1. 21.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7호

2. 변경이유

- 거창승강기R&D센터 건립 사업이 2010년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주체인 경상남도에서 계획입지 변경 요청
- 현 승강기R&D센터 계획입지는 승강기밸리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군민 및 언론을 통해 홍보된 상태이나 안정적인 국비지원과 원활한 “밸리”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획입지를 일반산업단지로 변경

3. 변경된 재산의 표시

■ 당 초 ○ 토 지

(단위: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의 표 시			기준가격	취득 시기	취득사유	취득재산 소 유 자	비 고
	구분	소 재 지	수 량					
계		8필지	16,530	40,896				
1	토지	남상면 월평리 1544	391	3,910	2010	승강기 R&D센 터 건립	김정연	사업비 : 500백만 원
2		남상면 월평리 1545	705	7,050			백병근	
3		남상면 월평리 1546	70	700			박기태	
4		남상면 월평리 1601-2	865	3,425			국(농수산부)	
5		남상면 월평리 산179	7,530	18,373			차인환외2인	
6		남상면 월평리 산180	277	676			차해수	
7		남상면 대산리 산132	6,660	6,727			이헌철	
8		남상면 대산리 산184	32	35			국(농수산부)	

■ 변 경

○ 토 지

(단위: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의 표 시			기준가격	취득 시기	취득사유	취득재산 소 유 자	비 고
	구분	소 재 지	수 량					
계		1필지	16,529	1,518,320				
1	토지	남상면 대산리 거창일반 산업단지내 04BL 5Lot	16,529	1,518,320	2011	승강기 R&D센 터 건립	거창산업 단지(주)	사업비 : 1,519백 만원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거창승강기센터 건립 조성부지 변경 취득안은 사업 시행주체인 경상남도에서 한국형 중·저속 승강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거창승강기 R&D센터 건립사업으로서 당초 대상지로 선정되었던 남상면 월평리 1544번지외 7필지 16,530㎡에 대하여 매수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 계획입지에 건립시 장기간 소요되고 또한 2010년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획입지를 일반산업단지로 계획변경 요청이 있어, 남상면 대산리 거창일반산업단지내 04BL 5Lot 16,529㎡를 조성 대상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준가격 및 사업비 차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